

#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의안번호	11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18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정사유

지방재정법 제5조(회계의 구분)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(안 제1조)
- 나. 특별회계 수입 및 세출(안 제2조)
- 다. 회계의 수입지출에 따른 일반회계 예(안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- . 지방재정법 제5조

4. 입법예고 : 2002. 9. 16. ~ 2002. 10. 5. 결과 → 특기할 사항 없음

5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(설치) 하수도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 하수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2조(경비) 특별회계는 하수료, 사용료, 수수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, 기타 수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.

제3조(준용) 이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의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